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0
------	----

2018년 9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년 9월 6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서정협)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나. 규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m^2$, 전용면적 $396.6m^2$)
- 다.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 라.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마. 주요사업

- 미디어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바. 출연금액 : 87,738천원

사.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9회계 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 개관하여 「방송법」 제90조의2제7항 및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의회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의 20%를 분담하고 있음.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정회원 등록을 통해 미디어 교육과 체험, 방송제작 시설·장비 대여, 방송 참여 활성화 등을 무상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복합공간으로 운영 중임.

최근 3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이용자 만족도를 살펴보면, 2015년 출범당시 92.7점 이었던 만족도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므로 운영상 주의가 요망됨.

<최근 3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추진실적>

연도 별	자유학기재 등 학교 미디어 교육		장비 및 시설 지원	상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디어센 터 교육 이수율	미디어센 터 이용자 수	이용자 만족도
	학교수	수강인원		강좌 수	수강인원			
2017	30개	10,892명	23,111명	41개	3,791명	90%	43,733명	83.3점
2016	30개	11,506명	24,268명	37개	2,710명	93%	46,344명	88.8점
2015	6개	222명	4,264명	17개	973명	91%	8,664명	92.7점

- 또한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르면 출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경비로서 보조금과 달리 집행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납절차가 없으며,

센터의 전체 운영비 중 서울시에서 교부한 일부 운영비만 정산함에 따라 전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확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15년 5월 「방송법」 제90조의2¹⁾에 근거하여 출범한 이후 2016년 2월 위탁집행형 준정부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등 전국에 7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10개 센터를 확충하여 '미디어 교육과 참여를 통한 국민 행복 증진 기관'이란 비전 아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센터를 목표로 계속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2020년 하반기까지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되어 있으며,

1)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전용공간이 설립될 때까지 5명의 인원으로 성북구 보문로 171번지 노블레스빌딩에서 임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건립 중인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20년 개관하면 동 센터 내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전하여 시립시설로 운영되므로 사업과 규모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개관이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시비지원액 증감율>

년도별	시비지원액	증감율
2018	85,987	2.0%
2017	84,325	27.7%
2016	66,000	43.9%
2015	37,000	-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서울시가 협약에 의해 운영비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대로 출연함이 타당할 것이나

협약에는 운영비의 20%를 분담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지원기간이나 지원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서울시와 성북구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개관 전 운영비 부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시립시설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60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15. 12. 15.)
- 나.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③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치 :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빌딩
- 나. 규모 : 지상 2~3층(임차면적 $521.4m^2$, 전용면적 $396.6m^2$)
- 다. 사업주체 : 시청자미디어재단(방송통신위원회 출연기관) 서울센터
- 라.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사무실
- 마. 주요사업
 - 미디어 교육 지원 : 미디어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
 -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 :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지원 등
- 바. 출연금액 : 87,738천원

사.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센터 운영비 지원 필요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

제5조(운영비 분담) ③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를 분담한다.
2.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를 출연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법」 제90조의2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편성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시설과 문화시설2팀 서은성(☎2133-4229)